

##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29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22.1.13. 시행)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규칙 조문을 변경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33, FAX : (043)740-303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대상 :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견 제출자 성명(법인·단체명) :

○ 의견 제출자 주소 :

○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의견(찬·반 의견 및 사유)	비고

##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으로, “제43조”를 “제52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제6항”을 “제32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32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6조제4항”을 “법 제32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26조제6항”을 “법 제32조제6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법 제26조제6항”을 “법 제32조제6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 및 제43조와 「영동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대상) 영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조례공포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26조제2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조례</li> <li>2.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를 의장으로부터 이송 받은 후 5일 이내에 군수가 공포하지 않은 조례</li> </ol> <p>제3조(공포시기) 의장은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제2조의 적용대상 조례에 대하여 특별한</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 제52조 ----- ----- ----- ----- ----- -----.</p> <p>제2조(적용대상) ----- ----- ----- ----- 제32조제6항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 법 제32조제2항 ----- ----- -----</li> <li>2. 법 제32조제4항 ----- ----- ----- -----</li> </ol> <p>제3조(공포시기) ----- 법 제32조제6항 ----- ----- -----</p>

사유가 없으면 각각 해당하는 다음 날부터 빠른 기일 내에 지체 없이 공포한다.

제4조(전문) ① (생략)

② 제1항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해야 하며,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  
-----  
-----.

제4조(전문)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법 제32조제6항  
-----  
-----  
-----  
-----.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지방의회는 제3항에 따라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前)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

다.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